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 ● 사업목적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 지원대상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한 사업장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상한

※ 용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용자금리: 2.2%(담보), 3.7%(신용,보증)

## ● 사업추진체계

용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지방노동관서)

용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용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 ●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http://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